

# 서울특별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53
----------	-----

2012년 6월 22일  
보건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2년 6월 8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12년 6월 12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 
보건복지위원회(2012년 6월 22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)

- 가.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청소년시설로서,
- 나.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청소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## 다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 (2013.01.01 ~ 2015.12.31)
- 위탁업무
  - 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  -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·운영
  - 근로청소년을 위한 상담·교육·복지후생 및 기타 복지증진사업
- 소요예산 : 1,469,300천원(2012년)
  - 1,520,000천원 (2013년),
  - 1,558,000천원 (2014년),
  - 1,620,000천원 (2015년)
  - ※ 2013~2015년도 예산 예상금액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재위탁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김태호)

#### (1) 동의안 제출 배경

-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로서, 위탁기간(2012.01.01 ~ 2012.12.31)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.

#### (2) 민간위탁 필요성 및 지속성에 대한 검토

-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근로청소년종합복지시설로서, 근로청소년의 권리 향상, 근로청소년에 대한 주거안정 및 생활지원, 근로청소년의 자기 계발 지원, 근로청소년의 건전문화 선도 및 지원

등을 통해 근로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기관으로서,

-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제3항,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6조제1항,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제1항임.
- 위탁업무는 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,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·운영, 근로청소년을 위한 상담·교육·복지후생 및 기타 복지증진사업 등으로, 서울시가 동일조건의 인력이 운영할 경우 인건비의 상당한 증가로 예산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고, 그로 인한 사업비 부분의 상대적 감소로 서비스 질 하락이 예견되어,
  -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,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

### (3) 근로청소년복지관 민간위탁에 있어서의 유의점

- 민간위탁은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,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고 기존의 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양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함. 즉 근로청소년복지관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책임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.
-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해당법인<sup>1)</sup>에 대해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업무 자체에 관한 것임. 다만, 해당법인의 서울시 민간위탁운

---

1) 서울시 2010년도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(2010.10.1) 심의결과 해당 법인(한국청소년연맹)에 대해 재계약 기간 “2년”을 “1년”으로 축소하도록 심사하고, 심의결과를 “조건부 적정”으로 해당 부서(아동청소년담당관)에 통보한 바 있음.

영평가에서 일부 ‘조건부 적정’의 결과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,

- 향후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법인 및 그 소속 근무자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여,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으로 보임.
- 한편, 서울시는 민간위탁으로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복지서비스가 공급됨에 있어, 민간부문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위주의 계약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소위원회 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
7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85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2년 6월 8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청소년시설로서,
- 나.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청소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
- 소재지 :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740번지
- 시설규모 : 대지 69,897m<sup>2</sup>, 건물 27,029m<sup>2</sup>  
(건물 11개동: 복지관 1개동(지하2층~지상3층), 가산문화센터 1개동(지하1층~지상3층), 임대아파트 9개동 450세대(5층))
- 준공일자 : 1982. 11. 30
- 개관일자 : 1982. 12. 17
- 이용대상 : (근로)청소년 및 지역주민  
※ 임대아파트 : 서울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 150만원 이하, 만26세 이하의 미혼여성근로자(대학원 졸업자 제외)

### 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 (2013.01.01 ~ 2015.12.31)

○ 위탁업무

- 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-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·운영
- 근로청소년을 위한 상담·교육·복지후생 및 기타 복지증진사업

○ 소요예산 : 1,469,300천원(2012년)

- 1,520,000천원 (2013년),
- 1,558,000천원 (2014년),
- 1,620,000천원 (2015년)

※ 2013~2015년도 예산 예상금액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재위탁)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제3항,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6조제1항,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제1항

○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1차 : 1982.12.01 ~ 1987.12.31(5년, (사)한국청소년연맹)
- 2차 : 1988.01.01 ~ 1992.12.31(5년, (사)한국청소년연맹)
- 3차 : 1993.01.01 ~ 1995.12.31(3년, (사)한국청소년연맹)
- 4차 : 1996.01.01 ~ 1998.12.31(3년, (사)한국청소년연맹)
- 5차 : 1999.01.01 ~ 2001.12.31(3년, (사)한국청소년연맹)
- 6차 : 2002.01.01 ~ 2004.12.31(3년, (사)한국청소년연맹)
- 7차 : 2005.01.01 ~ 2007.12.31(3년, (사)한국청소년연맹)
- 8차 : 2008.01.01 ~ 2010.12.31(3년, (사)한국청소년연맹)
- 9차 : 2011.01.01 ~ 2011.12.31(1년, (사)한국청소년연맹)
- 10차 : 2012.01.01 ~ 2012.12.31(1년, (사)한국청소년연맹)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市 직영시 근무연한 등 동일조건인 인력이 운영할 경우 인건비 부분의 상당한 증가로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고, 그로 인한 사업비 부분의 상대적 감소로 서비스 질 하락이 예견되며,

- 또한,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 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
-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 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  -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경우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